

## 9. 서민주택 1가구1주택 감면시

§ 지특법33②/영14조 -취득세100% 농비

※주민등록법상 외국인 제외, 재외국민도 제외

〈서민주택감면요건=주택가격1억미만+전용(연)면적 40㎡이하+1가구1주택〉

1. 매매계약서 <취득 60일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야함>
2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
3.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4. 감면 신청서 및 취득세 신고서

### 서민주택 추징사유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2.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

취득 60일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